

담양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3. 15.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입학 축하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실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정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 초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기존)

⇒ (개정) 초등·특수·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제5호

나. 지원대상 확대 (안 제4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담양군에 등록된
대안교육시설 입학생 지원

4.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5 ~ 3. 22(7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3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지원대상은 2024년도 초등학교 최초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4. (생 략) 제4조(지원대상)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